

의안번호	2218183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6.8.14.
추계번호	26D204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 요건을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은 지원 대상을 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원칙으로 함	재량규정
3	안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3	안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 상세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 및 보조금 지원 확대 관련(안 제2조 및 제6조)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 단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비 외 운영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5년간(2022년~2026년)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수와 연간 보조금 지원액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 수와 연간 보조금 지원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또한 다음연도 지원액 규모가 예산으로 확정된 이후 지원사업 신청 접수와 지원대상 선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수 증가가 반드시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곤란함

<참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연도	등록 단체수 (전년도 4분기 기준)	보조금 지원액 (연간 총액)	비고
2022	15,452	65억원	각 연도 12월에 다음연도의 공익사업 지원 신청 접수
2023	15,558	65억원	
2024	13,869	33억원	
2025	13,940	30억원	
2026	14,022	33억원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mois.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무상 사용·수익 관련(안 제11조의2)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는 경우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대부·사용·수익 건수, 건별 평균 재정수입 감소분 등의 현황자료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 추계가 불가능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